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 고
<p>제6조(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) ①~④ “생략”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회원종목단체의 권리와 의무) ①~④ “현행과 같음.” ⑤ <u>회원종목단체가 소관범위 내 대회를 개최하려는 경우,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·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&lt;신설 2025. 00. 00.&gt;</u> <u>[제목개정 2025. 00. 00]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조 명칭 변경</li> <li>• 안전관리 조치 의무 명시</li> </ul>
<p>제25조(임원의 임기) ① “생략”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, <del>감사</del> <u>외의</u> 임원의 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&lt;개정 2019. 11. 7., 2022. 12. 26.&gt; 1~2 “생략”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③~⑤ “생략”</p>	<p>제25조(임원의 임기) ① “현행과 같음.”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, 임원의 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&lt;개정 2019. 11. 7., 2022. 12. 26., <u>2025. 00. 00.</u>&gt; 1~2 “현행과 같음” 3. <u>감사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</u> ③~⑤ “현행과 같음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감사의 임기 명 <del>확화</del> (부칙을 본문에 명시)</li> </ul>
<p>제47조의2(체육회의 감사·징계 등) ①~⑥ “생략” ⑦ 체육회는 <u>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,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. &lt;신설 '17. 8. 7.&gt;</u></p> <p>⑧~⑨ “생략”</p>	<p>제47조의2(체육회의 감사·징계 등) ①~⑥ “현행과 같음.” ⑦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<u>경우,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조직 운영 및 사무처 업무 전반(또는 일부)에 대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&lt;신설 2017. 8. 7., 2025. 00. 00.&gt;</u> 1. <u>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</u> 2. <u>신규 회원종목단체 지원</u> 3. <u>회원종목단체가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</u> ⑧~⑨ “현행과 같음.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관리·감독 권한 명문화</li> </ul>
<p>제47조의3(회원종목단체 평가) ① “생략” ② <u>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7조의3(회원종목단체 평가) ① “현행과 같음.” ② <u>삭제 &lt;2025. 00. 00.&gt;</u></p> <p><u>부칙(2025.00.00.)</u> <u>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</u> <u>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평가위원회 규정」 폐지로 인한 조항 삭제</li> </ul>